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(모경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4.

발 의 자 : 모경중 · 안도걸 · 조계원
주철현 · 신정훈 · 양부남
김원이 · 위성곤 · 민형배
전진숙 · 김문수 · 이광희
김교홍 · 최혁진 · 허성무
서삼석 · 박희승 · 민홍철
문대림 · 한병도 · 이용우
조인철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,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보수체계가 경찰공무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, 승급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. 순경급에서 경장급까지의 승급이 최소 15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적인 공무원 승진 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, 경위급까지는 약 3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.

또한, 청원경찰 제도는 단일 직급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.

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6조 제2항 등).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15년”을 “6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5년”을 “6년”으로, “23년”을 “13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23년”을 “13년”으로, “30년”을 “21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30년 이상”을 “21년 이상 30년 미만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직기간 30년 이상: 경감

④ 청원주는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청원경찰의 대외직명)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청원경찰경비) ① (생 략)	제6조(청원경찰경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재직기간 <u>15년</u> 미만: 순경	1. ----- <u>6년</u> -----
2. 재직기간 <u>15년</u> 이상 <u>23년</u> 미 만: 경장	2. ----- <u>6년</u> ----- <u>13년</u> ----- -----
3. 재직기간 <u>23년</u> 이상 <u>30년</u> 미 만: 경사	3. ----- <u>13년</u> ----- <u>21년</u> ----- -----
4. 재직기간 <u>30년</u> 이상: 경위	4. ----- <u>21년</u> 이상 <u>30년</u> 미 만-----
<신 설>	5. 재직기간 <u>30년</u> 이상: 경감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청원주는 직무수행 중 현저 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를 할 수 있다.
<신 설>	제6조의2(청원경찰의 대외직명)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

	<u>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대 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.</u>
--	--